

제주지방법원 2022. 5. 25 선고 2021나11015 판결 [부당이득금반환]

재판경과

제주지방법원 2022. 5. 25 선고 2021나11015 판결

제주지방법원 2021. 1. 8 선고 2020가소8831 판결

전문

원고, 피항소인A단체

소송대리인 변호사 반희성

피고, 항소인B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연봉

변론 종결2022. 3. 2.

판결 선고2022. 5. 25.

제1심판결제주지방법원 2021. 1. 8. 선고 2020가소8831 판결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6,215,15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7.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의 가.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N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6,215,15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6. 11.부터 이 사건 소장부분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A단체 가맹 버스에 대한 공제사업자로서 서귀포시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버스(이하 '원고 측 버스'라 한다)에 대한 공제보험자이다.

나. 피고는 2019. 3. 19. 15:49경 원고 측 버스에 탑승하였다가 C고 정류장에서 하차하던 중 닫히는 문에 충격하는 사고가 발생하여 상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2019. 3. 20.부터 2020. 4. 28.까지 D병원, E한의원, F병원, 제주대학교병원, G한의원 등에서 치료를 받았다(이하 '피고 주장 사고'라 한다).

다. 원고는 피고 주장 사고로 인한 피고의 치료비를 지급보증하였는바, 2019. 4. 26.부터 2020. 5. 21.까지 피고를 대신하여 나.항 기재 병원에 치료비 합계 6,215,150원을 지급하였다.

라. 한편 피고는 피고 주장 사고 발생 전인 2018. 8. 8. 공사현장에서 추락사고를 당해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강 내로의 열린 상처가 없는 외상성 혈기흡, 흉추의 다발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고, 피고가 사업주 등을 상대로 진행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제주지방법원 2019가단64855, 이하 '관련 사건'이라 한다)의 제1심은 피고의 노동능력상실률을 40%로 판단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5, 13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내지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요지

1)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피고 주장 사고로 인한 피고의 치료비 6,215,150원을 대신 지급하였으나, 피고는 피고 주장 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은 바 없으므로 법률상 원인 없이 치료비 6,215,150원 상당의 이득을 얻고 원고는 동액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금 6,215,15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피고 주장 사고로 버스 바닥에 떨어져 회전근개파열 및 회전근개건증 등의 상해를 입었거나 기존 추락사고로 인한 상해의 정도가 악화되어 치료를 받았으므로 원고는 그 치료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갑 제13호증,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 내지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피고 주장 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다거나 기존 추락사고로 인한 상해의 정도가 악화되었다고 볼 수 없다.

① 피고 주장 사고 당시 버스 내부 블랙박스 영상에 의하면 달히는 차량 문이 피고의 왼팔 상완부와 극히 짧은 시간(1~2초가량) 닿았을 뿐이고, 피고는 별다른 충격을 느끼지 못한 채 곧바로 버스에서 하차하여 그대로 걸어간 것으로 보인다. 즉 피고가 버스 문에 끼거나 넘어지는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 주장 사고로 인하여 피고의 신체에 상해가 발생할 정도의 유형력이 가해졌다고 볼 객관적 자료가 없다.

② 피고는 2018. 8. 8. 공사현장에서 추락사고를 당해 심한 상해를 입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피고 주장 사고의 내용, 당시 피고의 신체에 가해진 충격 정도에 비추어 볼 때, 피고 주장 사고로 인해

피고의 기존 상해 정도가 악화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③ 관련 사건에서 피고의 신체를 감정한 감정의가 위 2018. 8. 8.자 상해에 대한 피고 주장 사고에 의한 기여도는 10% 내외라고 회신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이는 피고가 원고 측 버스에서 하차하는 과정에서 바닥에 넘어지는 사고를 당하였다는 것을 전제로 한 판단으로 보이는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 주장 사고 당시 피고가 바닥에 넘어진 사실을 인정하기 어려운 이상, 위와 같은 사고 기여도 회신 결과를 그대로 따를 수 없다.

2) 따라서 피고는 법률상 원인 없이 치료비 6,215,150원 상당의 이득을 얻고 원고는 동액 상당의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금 6,215,150원 및 이 사건 소장부분 송달일 다음 날인 2020. 7.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원고는 2020. 6. 11.부터의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그런데 부당이득반환의무는 이행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무이므로 그 채무자는 이행청구를 받은 때에 비로소 지체책임을 지는 것인데(민법 제387조 제2항), 피고가 이 사건 소장부분을 송달받기 전에 원고로부터 이행청구를 받았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리고 부당이득반환의무자가 악의의 수익자라는 점에 대해서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책임을 진다고 할 것인데(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9다24187, 24194 판결 참조), 이 사건 소장부분이 피고에게 송달되기 전에 피고가 자신의 이익 보유가 법률상 원인 없는 것임을 인식하였다는 점에 대한 원고의 주장·입증이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소장부분 송달일 다음 날인 2020. 7. 7.부터의 지연손해금만 인정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원고는 6,215,150원 및 이에 대한 2020. 6. 11.부터 이 사건 소장부분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였을 뿐인데, 제1심판결은 피고에 대하여 원고가 지급을 구한 위 지연손해금의 범위를 넘어 2020. 6.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의 지급을 명하고 있는바, 이는 처분권주의에 위배된다),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강건

판사정양순

판사이선헌